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7.2.21(화) 16:00

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2월 13일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2월 14일

3. 제안 이유

- 조례의 상위법이 폐지되어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

4. 주요내용

가. 제명 “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” → “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”

나. “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” → “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”(안 제1조)

다. “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” → “충청북도기업진흥원”(안 제1조 및 제3조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그동안 근거 법률이었던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되었고 대신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22에 조문이 신설됨으

로써 이를 개정함은 물론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- 다만,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소상공인 관련 조문이 삭제되었는데 이를 삭제한 이유와 삭제 후 소상공인 지원 등에 문제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임.